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타결과 농업부문 시사점

석준호·문한필·김지연

요약

미국 주도로 진행되었던 NAFTA 개정협상(USMCA)이 타결되어, 캐나다 의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를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 협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에 공격적인 수입 관세를 부과하며 재협상을 주도함.
- 협상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미국-멕시코 양자협상 우선 추진으로 전환 후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 미국-캐나다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USMCA가 새롭게 타결, 2020년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는 2019년 12월 12일 상원에서 개정안에 승인하며 세 국가 중 가장 먼저 비준절차를 완료하였고, 미국도 2019년 12월 하원 의결 후 2020년 1월 16일 상원 의결이 이루어지면서 자국 내 비준절차를 완료함.
-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국회 일정으로 자국 내 비준절차가 지연되면서 2020년 2월 이후 비준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USMCA 농업부문 개정내용은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초점

- 미국은 캐나다 원유 공급관리프로그램, 곡물등급제 및 종자등록제도로 인한 간접적 시장보호조치에 제동을 걸고, 개선을 요구하여 이를 USMCA 조문에 포함시킴.
- SPS를 식품안전성 문제에 국한하여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SPS 조치의 무역촉진 효과(지역화·구획화, 동등성, 양립성)를 강화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음.
- 수출보조금 금지원칙을 조문에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이익제기 규정 또한 협정문에 포함됨.

USMCA는 농업부문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조문을 포함하는 협정

- CPTPP와 같이 한·미 FTA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독점적 식품구성비율을 명시함.
- 구체적으로 국내산 상품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다른 국가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한 정보기밀보호 규정을 포함함.

USMCA는 농업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된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 포함

- CPTPP와 같이 한·미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농업생명공학기술 관련 조항을 포함함.
- 농업생명공학기술이 GMO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GMO 농산물 주요 수출국들의 개방 요구에 직면할 수 있음.
- 농업생명공학기술 관련 생물학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방역, 검역부문의 투자 확대가 요구됨.

01

NAFTA 재협상 배경 및
USMCA 타결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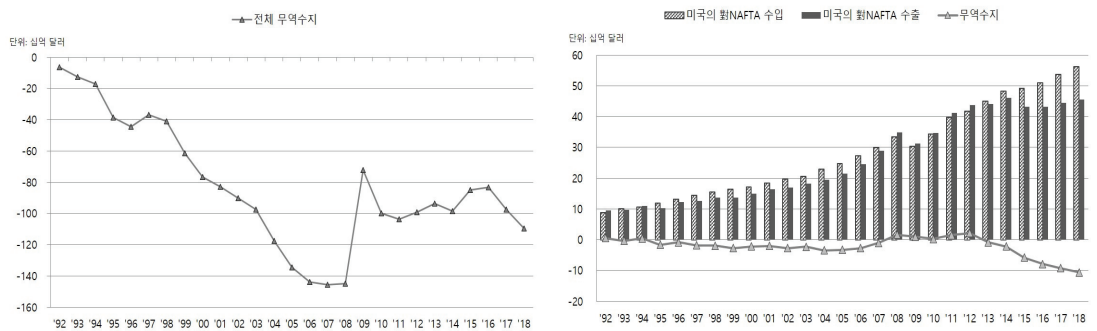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을 중심으로 1992년 12월에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이 출범하였지만, 미국 내에서 협정의 실익에 대해 20년 넘게 논쟁 지속

2018년 기준 미국의 對캐나다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259.4억 달러, 對멕시코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837.6억 달러에 달함.

- 농산물의 경우에도 NAFTA 가입 이후 미국의 對NAFTA 농업무역수지는 2008년에서 2012년 구간을 제외하고는 적자를 기록하였고, 2012년 이후 적자 폭이 계속해서 확대됨.

NAFTA 협정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 협정이 미국의 무역수지와 고용을 악화시켰고, 중공업에 기반하고 있는 여러 주들(미시건, 일리노이, 위스콘신 등)의 실업을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비판함.

〈그림 1〉 미국의 對NAFTA 무역수지(좌)와 농산물 무역(우) 추이



주: 농산물 무역 실적은 HS코드 2단위를 기준으로 01-24의 교역통계를 집계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0. 1. 13.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를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에 공격적인 수입관세를 부과하면서 재협상을 주도함.

- 표면적으로는 1993년에 체결된 NAFTA가 교역 환경 변화(지식재산권 강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의 내용을 적절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NAFTA 재협상을 추진함.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회원국 간 의견 차이로 협상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미국-멕시코 양자협상 추진을 우선하여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으며(M. Angeles Villarreal et al. 2018), 최종적으로 미국-캐나다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2018년 11월 30일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가 새롭게 타결

재협상의 쟁점들은 미국이 제시한 목표가 대체로 관철되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의 주장도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됨(자동차 원산지: 부품 역내가치비율 하향조정, 캐나다 낙농시장 개방: TRQ(Tariff Rate Quota) 형태로 상호개방,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미-멕시코 간 투자분쟁에 대해 적용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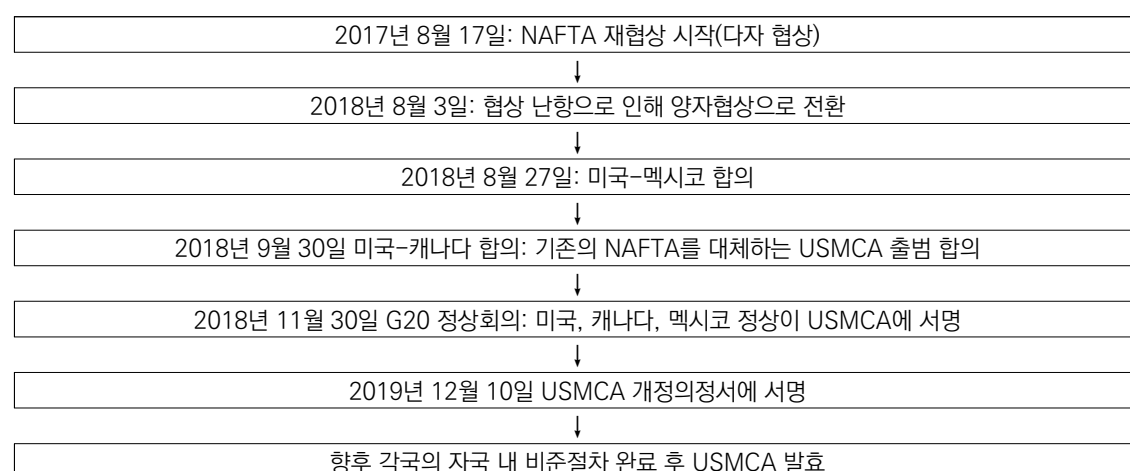
USMCA에서는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노동 등의 조항에서 무역규범이 강화되었으며, ‘환율조작 금지’와 ‘비시장경제국과의 FTA 체결조건’이 무역협정 최초로 도입됨.

2019년 6월 멕시코가 USMCA 참여국 중 처음으로 비준함. 미국에서는 미 하원에서 USMCA의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비준이 지연되었지만¹⁾, 미 무역대표부가 서한을 통해 해명하면서 갈등이 해소되고, 2019년 12월 10일 3국은 USMCA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s)에 서명

멕시코(2019년 12월)와 미국(하원-2019년 12월, 상원-2020년 1월)은 USMCA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자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했고, 캐나다의 자국 내 비준절차가 완료(2월 이후 예정)되면서 USMCA는 최종 발효됨.

- 캐나다의 경우, 국회 일정으로 인해 국내 비준절차가 지연되면서(Reuters 2019) 2020년 2월 이후 비준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 중에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USMCA 타결 과정



자료: Government of Canada 및 USTR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2019. 7. 31. “USMCA 관련 동향(미 민주당 USMCA 관련 요구사항 전달).”(검색일: 2019. 12. 19.)

02

농업 관련 NAFTA 재협상 쟁점과 USMCA 타결 결과

2.1. 회원국별 농업분야 재협상 목표

미국이 발표한 농업분야 NAFTA 재협상의 주요 목표는 ① 농산물에 대한 무관세 유지 및 상호 시장접근성 개선, ② 미국산 수출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교차보조금, 제약적인 TRQ 관리, 가격차별·인하) 제거, ③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규정 개선(과학 기반 SPS 조치, 농식품 수출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벽해소 메커니즘 수립 등)(Johnson, R. 2017)

미국은 NAFTA 협정의 농산물에 대한 현행 호혜적 무관세 시장을 유지하면서 미국 농산물이 동등한 기회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며, 미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협상을 추진하고,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이슈 및 관련조항을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 수준으로 강화(USTR 2017)하고자 함.

캐나다는 농업분야에서 기존 유제품, 가금류, 조란 등에 시행해 온 공급관리 정책의 유지를 주요 협상목표로 설정(CBC 2017)하고, 멕시코는 농업분야의 별도 협상목표를 미설정

기존 NAFTA 협정에서는 캐나다의 유제품, 가금류, 조란 등에 대한 정부의 공급관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이들 품목에 TRQ를 설정해 수입관리를 하고 있었음.

캐나다는 이러한 수입통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시장가격과 농가소득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그림 3〉 각국의 NAFTA 농업부문 주요 재협상 목표



자료: USTR(2017)와 CBC(201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2. USMCA 농업분야 주요 타결 결과²⁾

USMCA의 농업분야는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산 농산물 수출의 장애요인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방향으로 타결되었으며, 수세적 입장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도 일부 성과를 도출

특히, 미국은 對캐나다 농산물(유제품) 시장접근을 큰 폭으로 개선했으며, 역내 주류교역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회원국 간 라벨링(Labeling) 및 인증 규정에 합의함.

캐나다는 설탕, 유제품, 땅콩 및 면화의 對미국 시장접근성을 제고함.

멕시코는 미국이 농산물 등급을 활용해 멕시코산 농산물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

그러나 USMCA가 미국의 역내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모든 제약요인들을 해소한 것은 아님.

미국 남동부 농민이 계절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무역구제법의 변경을 요구하였지만, 이는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산 신선 감자의 對멕시코 및 對캐나다 시장접근성을 제약하는 비관세조치도 포함되지 않음. 또한, USMCA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해결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지 않음.

캐나다는 원유공급관리체계 변경으로 잉여우유³⁾(탈지분유, 고단백 농축물)의 가격을 낮추어 미국의 對캐나다 수출을 제약했던 원유가격제도(원유공급관리체계)의 변경에 동의함.

- 캐나다는 USMCA 발효 6개월 후, 'Class 7' 등급을 철폐할 예정임.
- 또한, 캐나다는 탈지유 고품분 가격을 미국 무지방 분유 가격과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책정하기로 하였으며, 탈지분유와 고단백 농축물의 對미국 수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함.
- 이외에도 미국과 캐나다 양국은 우유등급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서로에게 통지하기로 함.

캐나다는 미국산 밀과 캐나다산 밀을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곡물등급제를 수정하기로 합의함.

캐나다의 미국산 축산물의 TRQ를 증량하여 미국산 우유, 크림, 버터, 탈지분유, 치즈 등의 낙농품과 가공류 및 조란에 대한 TRQ를 확대하고, 유청과 마가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동의함.

- 크림, 버터, 농축우유, 발효유 및 버터밀크, 유청 분말 등은 기존 NAFTA의 TRQ보다 더 많은 물량이 USMCA에서 TRQ로 설정되었고, 탈지분유, 크림파우더, 산업용 치즈, 분유 등의 품목은 USMCA에서 TRQ가 신설됨.

2) Hopkinson, J.(2018), "Agricultural Provisions of the U.S.-Mexico-Canada Agreement"의 내용을 정리함.

3) Ultra-Filtered milk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타결과 농업부문 시사점

캐나다가 USMCA를 통해 미국에 개방한 유제품 시장의 규모는 캐나다 시장의 3.59%에 달하며, 이는 캐나다 가 CPTPP⁴⁾를 통해 개방한 수준인 3.25%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됨.

미국은 캐나다산 설탕과 유제품의 TRQ를 증량하고 땅콩과 면화의 관세철폐에 합의

- 치즈와 액상 및 건조 유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캐나다에 제공한 TRQ가 기존 NAFTA의 TRQ보다 더 크게 설정됨.
- 또한, 미국은 탈지분유, 분유와 같은 품목에 대하여 캐나다에 TRQ를 새롭게 제공함.
- 미국의 캐나다산 면화와 땅콩의 관세철폐 기간에 대해서도 명시함.

멕시코의 설탕과 시럽에 대한 수입관세율 조정 허용

멕시코는 설탕 및 시럽 제품에 대한 TRQ 쿼터 내 관세율을 기존보다 자국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함.

〈표 1〉 NAFTA와 USMCA에서 미국의 농축산물 TRQ 비교

NAFTA ¹⁾		USMCA ¹⁾	
구분	WTO TRQ(톤)	구분	TRQ(MT) ²⁾
우유 및 크림(액상 또는 냉동)	6,695	액상(우유, 사워크림, 아이스크림, 유음료)	10,500
크림 및 아이스크림(액상)	0.4		
아이스크림	5,668	-	-
-	-	탈지분유	7,500
-	-	분유	690
버터 및 사워크림	6,977	버터, 크림, 크림파우더	4,500
치즈	5,550	치즈	12,500
우유(건조)	5,261	건조(요거트, 사워크림, 유장, 유성분 제품)	11,030
저지방 분말(NFDM, WMP, 유장, 사료)	422		
건조 우유 및 크림	3,321		
건조(우유 및 크림)	99.5		
건조(우유, 크림, 유청)	296		
우유 및 크림(농축 또는 증발)	6,857	농축 우유	1,380
기타 유제품	4,105	기타 유제품	1,900
설탕, 시럽 및 당밀	22,000	설탕	9,600
-	-	설탕 함유 제품	9,600

주 1) 캐나다산 농산물에만 허용하는 TRQ임.

2) 6년차 TRQ 물량을 의미하며, 7년차부터 13년 동안 매년 1%씩 증량함.

자료: TAO 홈페이지(<http://tao.wto.org/>). 검색일: 2019. 1. 24.; USMCA 협정문.

4) CPTPP: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USMCA 협정문 부속서 3-B(멕시코-미국 간 농산물 교역)는 멕시코가 WTO의 TRQ를 제외하고는 설탕이나 시럽 제품에 대한 관세의 최혜국대우 원칙을 미국이 동 제품에 대해 제공하는 최혜국대우 원칙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함.

미국과 멕시코 간 농산물 등급으로 인한 차별 금지

USMCA 협정문 부속서 3-B는 농산물에 대한 등급기준과 서비스에 차별이 없어야 함과 어떠한 회원국도 농산물 품질 인증서에 원산지(국가) 기입을 요청할 수 없음을 규정함.

3국 합의를 통해 역내 주류 관련 무역장벽 해소 및 각국의 주류 특산물 인정

USMCA의 협정문 부속서 3-C(증류주, 와인, 맥주 및 기타 알코올음료)의 제3.C.1조 8항에 의하면, 당사국이나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증류주, 와인, 맥주, 그리고 기타 알코올음료를 해당국에 판매 시 USMCA 협정문 제2.3조를 준용하며, 무역왜곡을 유발하는 장벽 형성을 금지하고 투명한 기준을 요구한다고 규정함.

USMCA 협정문 부속서 3-C 제3.C.2조는 버번 위스키(Bourbon Whiskey), 테네시 위스키(Tennessee Whiskey)를 미국의 특산품으로, 테킬라(Tequila)와 메스칼(Mezcal)을 멕시코의 특산품으로, 캐나다 위스키(Canadian Whiskey)를 캐나다의 특산품으로 인정함.

USMCA 협정문 부속서 3-C 제3.C.3조는 3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와인 및 주류 라벨링(Labeling)의 투명성과 조화를 촉진하는 규칙을 포함한 것이고, USMCA 협정문 부속서 3-C 제3.C.4조는 국민 건강이나 안전 등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사국의 새로운 무역제한조치는 기존 당사국에 수입·판매되던 주류가 해당국 내에서 판매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과한 이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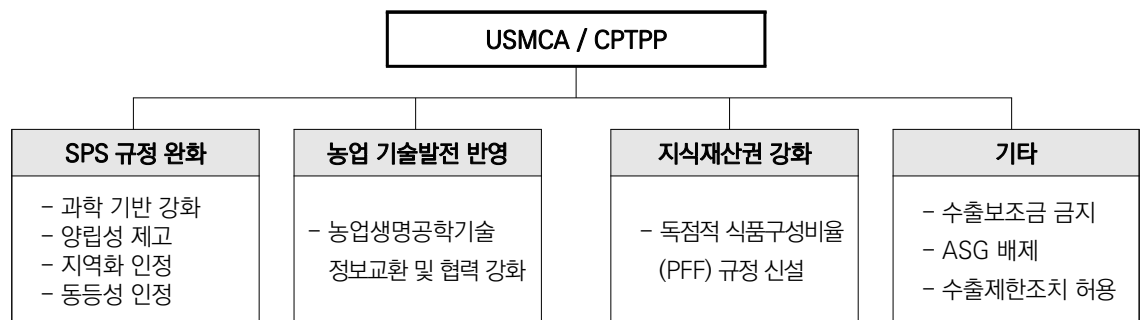
USMCA의 농업 관련 무역규범⁵⁾ (한·미 FTA, CPTPP와 비교)

USMCA 협정문에서 농업과 관련된 규범의 주요 특징(SPS 규정 완화, 농업기술발전 반영, 지식재산권 강화 등)을 살펴보고, 세부조항을 한·미 FTA 및 CPTPP와 비교 분석

CPTPP는 2018년 12월에 발효된 최신 협정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USMCA와의 비교가 필요함.

한·미 FTA는 USMCA가 미국의 이익실현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실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농업부문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USMCA와의 비교가 요구됨.

〈그림 4〉 최근 농업분야 무역규범의 특징



자료: 각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1. SPS 조치의 완화

SPS 조치의 과학적 기반 강조 및 무역 제한적 요소 배제

USMCA 협정문 제9.6조, CPTPP 협정문 제7.9조,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 제8.3조 모두 SPS 조치가 국제적인 기준이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5) 본 장은 USMCA 협정문, CPTPP 협정문, 한·미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USMCA 협정문 제9.6조와, CPTPP 협정문 제7.9조는 SPS 조치가 무역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해당 조항이 없음.

SPS 조치의 지역화 명시, 동등성 인정, 양립성 제고

WTO SPS 규정에 없는 양립성 조항이 USMCA 협정문 제9.7조(Enhancing Compatibility of SPS Measures)에 신설됨(CPTPP와 한·미 FTA에는 해당 조항 없음).

- USMCA 제9.7조 1항은 각 당사국의 SPS 조치와 다른 당사국의 SPS 조치 간 양립성(Compatibility)을 개선시키는 것은 각 당사국의 적절한 SPS 보호수준을 결정하는 권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무역을 촉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USMCA와 CPTPP 협정문에는 병해충 및 동물 질병과 관련한 지역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미 FTA 협정문에는 지역화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

- USMCA와 CPTPP는 WTO SPS 규정의 제6조를 준용하되, 수출국의 요구에 의거하여 지역화가 인정되는 과정에서 수입국의 의무조항 규정을 추가. CPTPP에서는 지역화보다 진전된 개념으로 동일한 생물보안체계를 적용하는 농장, 가공장 등을 한 구획으로 간주하는 구획화(compartmentalisation)까지 포함함.
- 국토가 넓은 농산물 수출국은 자국 내에서 기후나 방역 노력의 차이로 SPS 위험도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입국은 이러한 지역별 차이를 반영해 SPS 위험이 낮은 지역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 주요 수출국들이 주도하는 최근 무역협상에서는 SPS 조치를 국가에서 지역(또는 구역)으로 세분화해야 하고 수입국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협정문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임.

USMCA와 CPTPP는 SPS 조치의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는 WTO SPS 규정의 제4조를 준용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여러 측정 요소들이나 시스템에 기반하여 SPS 동등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SPS 동등성 규정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문까지도 고려하고 있음(한·미 FTA 협정문에는 해당 규정이 없음).

- 수출국들은 자국의 SPS 조치가 수입국의 보호수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수입국이 이를 자국의 SPS 조치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USMCA는 동등성 평가와 관련해 수출국의 요구에 의해 수입국은 평가절차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CPTPP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평가를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2〉 USMCA, CPTPP, 한·미 FTA의 SPS 조치 관련 규정 비교

협정	USMCA	CPTPP	한-미 FTA
과학 기반의 SPS 조치	제9.6조	제7.9조	제8.3조
- WTO SPS 기준 부합	제9.6조	제7.9조	제8.3조
· SPS 조치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	제9.6조 1항	제7.9조 1항	제8.3조 3항
· SPS 조치의 국제기준부합	제9.6조 3항	제7.9조 2항	-
· SPS를 통한 무역제한금지	제9.6조 10항	제7.9조 10항	-
- WTO SPS 기준 외	-	-	-
SPS 조치의 양립성(Compatibility)	제9.7조	-	-
- WTO SPS 기준 부합	-	-	-
- WTO SPS 기준 외	제9.7조	-	-
SPS 지역화	제9.8조	제7.7조	-
- WTO SPS 기준 부합			-
· 해충 프리존(Pest-Free Area)	제9.8조 2항	제7.7조 3항	-
· 질병 프리존(Disease-Free Area)	제9.8조 2항	제7.7조 3항	-
- WTO SPS 기준 외: 수입국 의무조항(지역화 인정절차)	제9.8조 4항-10항	제7.7조 4항-7항	-
SPS 동등성(Equivalence)	제9.9조	제7.8조	-
- WTO SPS 기준 부합(일반 동등성 규정)	제9.9조	제7.8조	-
- WTO SPS 기준 외			
· 즉시 평가절차 시작 규정	제9.9조 4항	-	-
· 합리적인 기간 내 평가절차 시작 규정	-	제7.8조 3항	-
· 시스템 기반 SPS 동등성 인정	제9.9조 2항	제7.8조 1항	-

자료: 각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2. 농업기술발전 반영: 농업생명공학기술

NAFTA와 한·미 FTA는 농업생명공학기술(Agricultural Biotechnology)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USMCA와 CPTPP는 농업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된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USMCA와 CPTPP 협정문에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등의 개발로 인한 농업생명공학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업생명공학이 접촉된 상품의 교역 시 회원국 간 투명성·협력·정보교환의 중요성을 명시함.

USMCA는 광의의 농업생명공학기술과 협의의 현대생명공학기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CPTPP는 협의의 현대생명공학기술만을 규정하고 있음.

- 현대생명공학기술은 재조합 DNA(recombinant DNA: rDNA) 및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및 분류학적 가계를 넘어선 세포융합기술의 적용을 의미하고, rDNA의 이용을 통해 생산된 상품은 유전자변형 작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로 정의되기 때문에(Berg et al. 1975) 현대생명공학기술과 GMO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

〈표 3〉 농업생명공학기술 규정 비교

협정	USMCA	CPTPP	한-미 FTA
농업생명공학기술 조항	제3장 섹션 B	제2.27조	-
- 광의의 농업생명공학기술 조항 (현대생명공학기술 조항 포함)	제3장 섹션 B	-	-
- 협의의 농업생명공학기술 조항 (현대생명공학기술 조항만 규정)	-	제2.27조	-

자료: 각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3. 지식재산권 강화: 독점적 식품 구성 비율(Proprietary Food Formulas: PFF)⁶⁾

USMCA와 CPTPP는 NAFTA나 한·미 FTA에 존재하지 않던 PFF에 대한 조항을 새롭게 도입

〈표 4〉 독점적 식품 구성 비율 규정 비교

협정	USMCA	CPTPP	한-미 FTA
PFF 조항	부속서 3-D	부속서 8-F	-
- 국내 상품과 동일 취급 - 기밀 보호	부속서 3-D 제3항	부속서 8-F 제3조b항	-

자료: 각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4. 기타

(수출보조금 금지) 한·미 FTA 협정은 수출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데 반해, USMCA와 CPTPP는 수출보조금 사용금지 원칙을 천명

〈표 5〉 수출보조금 규정 비교

존재 유/무	USMCA	CPTPP	한-미 FTA
무역 왜곡 방지를 위한 사용금지원칙	제3.4조	제2.21조	-
- 수출보조금에 대한 이의제기규정	제3.4조 2항	-	-

자료: 각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6) USMCA 협정문은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법 관련 정보 수집을 보장하는 동시에 당사국의 국내산 상품과 동등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독점적 제조법 관련 정보의 기밀을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WTO 농업협정 SSG 적용의 원칙적 금지) USMCA, CPTPP, 한·미 FTA는 모두 WTO 농업협정의 SSG(Special Safeguard)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규정하지만 CPTPP와 한·미 FTA에서는 예외적 조치로서 개별 당사국의 특정 품목에 한하여 농산물세이프가드(Agricultural Special Safeguard: ASG)를 설정하도록 허용하고 부속서에 명시

〈표 6〉 농산물세이프가드(ASG) 규정 비교

협정	USMCA	CPTPP	한·미 FTA
WTO SSG 금지원칙	제3.9조	제2.26조	제3.3조
- 회원국별 특정농산물(민감품목) ASG 허용	-	부속서 2-D/부록 B-1/일본	제3.3조 1항 /부속서 3-A

자료: 각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출제한조치 허용) USMCA와 CPTPP는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목적으로 한 수출제한조치(Export Restrictions)를 허용하고 있음.

한·미 FTA의 경우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표 7〉 수출제한조치 규정 비교

협정	USMCA	CPTPP	한·미 FTA
수출제한조치 규정	제3.5조	제2.24조	-
- WTO 농업협정 12.1조에 의한 수출제한조치	제3.5조 1항	제2.24조 1항	-
- 수출제한조치의 통지 의무	제3.5조 3항	제2.24조 3항	-

자료: 각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04

시사점

USMCA는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NAFTA에 대한 재협상 결과물로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FTA 재협상을 재차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미국이 캐나다 원유 공급관리프로그램, 곡물등급제 및 종자등록제도로 인한 간접적 시장보호부문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상당 부분 관철시켰다는 점을 볼 때, 향후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양자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농축산물 시장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한·미 FTA는 미국의 축산분야 수출 (특히 쇠고기)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하는⁷⁾ 반면, 감자, 사과, 배와 같은 원예작물들의 경우 對한국 수출이 여러 요인(한국의 SPS 조치와 PLS 도입 등)들로 인하여 제약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USTR 2018).

USMCA는 SPS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식품안전성 문제에 국한하여 활용할 수 있고, SPS 조치의 무역촉진 효과를 강화하는 데 초점

과학 기반의 SPS 조치, SPS 조치의 양립성, 지역화, 동등성, 감사, 수입 검사 등의 조항들을 통해 SPS는 무역 제한적이며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음.

- 만약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한다면, 2019년 무역정책의제와 2018년 무역협정 연차보고서에서 언급한 원예작물들(감자, 사과, 배)의 경우에는 과학 기반의 SPS 조치, SPS 조치의 양립성 및 동등성 조항을 활용하여 농업부문 비관세장벽을 낮추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및 협상전략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과 유사한 우리나라 농업생산구조를 고려할 때 SPS 조치의 지역화 조항에 의해 비관세장벽이 낮아진다면 그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예상됨. 엄격한 지역화 조항의 명시는 향후 CPTPP, RCEP, MERCOSUR 등 메가 FTA 타결에 직면한 국내 농업분야에서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됨. 최신의 통상규범인 USMCA와 CPTPP 모두에서 SPS 조치의 지역화 및 구체화 조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들 조항을 어떤 수준까지 명문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7) 미국은 2017년 기준 對한국 쇠고기 수출액이 약 12억 달러로, 일본에 이은 2위 수출대상국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타결과 농업부문 시사점

변화된 SPS 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검역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의 보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SPS 분야 통상전문가 양성도 서둘러야 함.

- SPS 변화는 계속해서 교역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전문 인력 및 제도의 정비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함.

USMCA는 농업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된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

USMCA와 CPTPP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개발 등 농업생명공학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관련 상품교역에 관해 회원국 간 협력·정보교환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향후 GMO에 대한 주요 수출국들의 개방 요구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내외의 생물학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 방역, 검역부문의 투자 확대가 필요함.

참고문헌

-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2019. 7. 31. “USMCA 관련 동향(미 민주당 USMCA 관련 요구사항 전달).” <http://overseas.mofa.go.kr/mx-ko/brd/m_5950/view.do?seq=1340699>. 검색일: 2019. 12. 19.
- Berg, P., Baltimore, D., Brenner, S., Roblin, R. O., & Singer, M. F. 1975. “Summary statement of the Asilomar conference on recombinant DNA molecul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72(6): 1981.
- CBC. 2017. 8. 14. “Canada's 10 NAFTA demands: A list of what Canada wants as talks start this week Social Sharing.” <<https://www.cbc.ca/news/politics/nafta-canada-demands-list-1.4246498>>. 검색일: 2018. 12. 3.
- Hopkinson, J. 2018. “Agricultural Provisions of the U.S.–Mexico–Canada Agreement.” *CRS insigh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Johnson, R. 2017.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and U.S. agriculture.” *CRS Report R4487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M. Angeles Villarreal and Ian F. Fergusson. 2018. “NAFTA and the Preliminary U.S.–Mexico Agreement.” *CRS insigh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Reuters. 2019. 12. 18. “Canada could be last nation to ratify USMCA trade deal: Trudeau.”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ade-canada/canada-could-be-last-nation-to-ratify-usmca-trade-deal-trudeau-id-USKBN1YL2DY>>. 검색일: 2020. 1. 14.
- USTR. 2017. *Summary of Objectives for the NAFTA Renegotiation*.
- USTR. 2018. *2018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CPTPP 협정문. <<https://www.mfat.govt.nz/>>. 검색일: 2018. 11. 18.~12. 10.
- USMCA 협정문. <<https://ustr.gov/>>. 검색일: 2018. 11. 18.~12. 10.
- 한-미 FTA 협정문. <<http://fta.go.kr/us/doc/1/>>. 검색일: 2018. 11. 18.~12. 10.
- Government of Canada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html>>. 검색일: 2018. 11. 18.~12. 10.
- TAO 홈페이지. <<http://tao.wto.org/>>. 검색일: 2019. 1. 24.
- UN Comtrade 홈페이지.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0. 1. 13.
- USTR 홈페이지. <<https://ustr.gov/>>. 검색일: 2018. 11. 18.~12. 10.

KREI 현안분석

감 수 허덕 명예선임연구위원 061-820-2261 huhduk@krei.re.kr
내 용 문 의 석준호 부연구위원 061-820-2364 junhoseok@krei.re.kr
발간물문의 성진석 책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71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타결과 농업부문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0. 3.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